

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6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30.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를 정비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지급기준중 시·도위원을 군의회의원으로 수정(안 제4조)
- 보상금 청구시 호적등본 첨부부분을 삭제(안 별지제1호서식)

3. 관련근거

- 행정규제 및 자치법규정비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.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중 “시·도의원”을 “군의회의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중 “시·도의원”을 “군의회의원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중 첨부서류1의 “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<u>시·도의원</u>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</p> <p>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<u>시도의원</u>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</p>	<p>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-----<u>군의회의원</u>----- ----- -- 2.----- -----<u>군의회위원</u>----- -----</p>